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3.7.16.(수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7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7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○ 2003. 7. 14 :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박 환 규)

가. 제안이유

-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의 신설에 따라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결과

- **정원의 총수를 2,522명에서 2,529명으로 조정 (증원 7명)**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62명 (변동없음)
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67명 (증원 7명)
 -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없음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6명 (변동없음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의 전문위원 한 상 혁)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영동소방서 방간파출소의 설치승인('95. 5. 23) 및 방간파출소의 청사 준공(2002. 10. 11)에 따라 자체조정이 가능한 소방직 표준정원 967명 범위 내에서, 방간파출소 신설에 필요한 정원 17명 중 10명은 자체조정하고, 7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**결의 및 답변요지** : “생략”

5. **토론요지** : “생략”

6. **심사결과** : 원안가결

7. **소수 의견요지** : “없음”

8. **기타 관련사항**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522명”을 “2,529명”으로 하고,
동조제2호중 “960명”을 “967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계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522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소방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<u>967명</u></p> <p>3. 내지 4 (생략)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</p> <p>..... <u>2529명</u></p> <p>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</p> <p>..... : <u>967명</u></p> <p>3. 내지 4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- ⑤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제21조 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1. 집행기관의 정원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- ④ (생략)

□ 소방직 표준정원

(행정자치부고시제2003-17호)

960 명	967 명	△ 7	

※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 조정 가능